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박찬대 · 허종식 · 맹성규
박선원 · 김교홍 · 이훈기
정진욱 · 김용민 · 문진석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,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,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,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

하도록 하는 한편,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6항, 제16조제7항 신설 등).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존중”을 “반영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”를 “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,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와 제7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”으로 한다.

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⑧ 국가는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시행계획의 예산 반영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6항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⑤ (생략)	제14조(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<u>준중</u> 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반영</u> -----.
⑦ ~ ⑩ (생략)	⑦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) ① ~ ⑥ (생략)	제16조(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⑧ 국가는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·시기·방법, <u>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</u>	⑨ ----- ----- <u>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,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</u>

<u>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국회 보고와 제7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</u> -----.
--	---